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 .
발 의 자	이지연 의원 외 7명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이지연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신문식 · 윤종호 · 장미경 · 장세구
(8인)

1. 제안이유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안 제2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 8. 27. ~ 9. 3.)결과 의견없음

조례 제 호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상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부 시설물은 제외)”을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보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생략)	제24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상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부 시설물은 제외)</u>	2. <u>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보수</u>
3. ~ 13.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대상이 공동주택의 가스공급시설 보수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재정의 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어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계 김영철(480-2862)